



## 개인정보보호규정

제정일	2014. 5. 1
개정일	2021. 1. 1
개정차수	6차
담당부서	전산정보과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범위) 범위는 본교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 학과, 부서 및 기관 등으로 한다.

### 제 2 장 조 칙

제 3조 (책임자 지정)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총장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,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하며 효율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해 각 부서 계·과장 및 학부(과)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둔다.

제 4조 (책임자)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7.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·변경 및 시행
8.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
9.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

[전문개정 2016. 9. 1]

제 5조 (분야별 책임자)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2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민원 처리
3.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관리 활동
4.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관리현황 보고
5. 부서 및 학과 개인정보취급자 지정·관리 (신설 2015.10. 1)
6. 기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요구하는 사항처리

###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

제 6조 (목적) ① 본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한다. 처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한다. (개정 2017. 9. 1)

1. 입시, 학사(일반)행정 업무 등 서비스 제공

2. 회원가입 및 관리

3. 기타 서비스 제공

② 본교는 원활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한된 범위에서 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③ 본교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.

④ 본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9. 5. 1]

## 제 4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제 7조 (설치)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제 8조 (조직) 위원회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내외로 구성한다.

2.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3. 위원은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 9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개인정보처리방침

2.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

3. 관련 규정 개정 및 폐지 (신설 2015.10. 1)

4.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0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5 장 안전조치 의무

제 11조 (안전조치의무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

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·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.  
(개정 2017. 9. 1)

1.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· 시행
2. 접근 권한의 관리
3. 접근 통제
4. 개인정보의 암호화
5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
6.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
7.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
8. 물리적 안전조치
9. 재해 · 재난 대비 안전조치
10. 개인정보의 파기

[전문개정 2019. 5. 1]

## 제 6 장 보 호 구 역 [장신설 2014.11. 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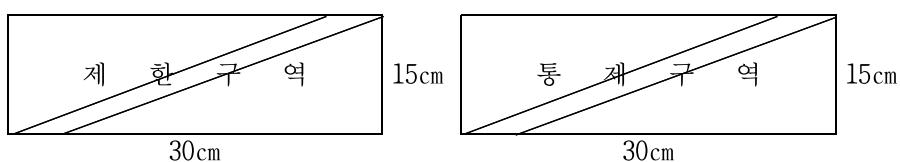
제 12조 (보호구역의 지정)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고 이에 상응한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. (개정 2017. 9. 1)

1. 제한구역 : 전산정보과 (개정 2021. 1. 1)
2. 통제구역 : 정보시스템실

[본조신설 2014.11. 1]

제 13조 (보호구역의 관리) ① 보호구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구역이란 소속부서의 중요성을 판단 올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해 일반인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제한구역, 통제구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.
  - 가. 제한구역 : 인가된 자 외에 접근을 방지하고 출입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
  - 나. 통제구역 :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.
2.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.
3.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분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

[본조신설 2014.11. 1]

제 14조 (보호구역의 보안대책) ① 보호구역의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야경계 대책
2.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
3. 항시 이용하는 출입문을 한 곳으로 하고 이중문 설치

4.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
5. 비상전원 공급 및 전력관리 대책 (개정 2015.10. 1)
6.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(신설 2015.10. 1)
7. 기타 보호구역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(신설 2015.10. 1)

[본조신설 2014.11. 1]

제 15조 (전산자료의 보호대책)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자료의 유출·파괴 등에 대비, 다음 각 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 9. 1)

1. DB 백업 장비 분산 운영 및 보관
2. 전산자료 보관 금고 사용
3. DB 암호화 및 접근제어 시스템 운용
4.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사용
5.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·입 통제
6. 전산망 불법침입(해킹) 및 바이러스 피해예방

[본조신설 2014.11. 1]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